

경찰청 질의에 대한 검토

2019. 4.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① 개요

- '18. 12. 경찰청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② 주요 내용

- 당사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기한을 도과하여 이의제기를 하였으나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검토 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20조는 당사자의 이의제기를 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 질서법은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질서법에 따른 “적법한” 이의제기만이 질서법상 이의제기로서 효력을 발생
- 질서법은 이의제기 기한을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므로 이의제기가 적법한 이의제기로서 효력을 발생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는 반드시 위의 기간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은 자동차의 주차위반 사실 등이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입증되고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

-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이하 “렌터카 임차인”)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이하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차 임차인”)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과태료 부과

도로교통법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은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60조(과태료)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3조, 제25조제1항·제2항·제5항, 제27조제1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56조에 따르면 렌터카 임차인 또는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차 임차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리스 사업자)와 동일하게 고용주등의 의무를 부담하므로, 렌터카의 실제 운행자가 제3자로 확인되어 제3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차인은 렌터카 혹은 리스계약에 따른 자동차의 고용주등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됨

- 질의의 경우 당사자가 기한을 도과하여 이미 체납처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의제기를 한 사안임
- 질서법에 따르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는 기한 내 제출된 이의제기만이 유효하므로, 당사자가 이들 기한을 도과하여 이미 체납처분까지 진행된 상태에서 제출한 이의제기는 부적법한 이의제기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따라서 당사자의 과태료 납부의무는 그대로 존속하며, 당사자가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독촉 및 체납처분 가능
- ※ 질서법은 행정청에 이의제기를 반려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부적법한 이의제기라도 이를 수리하여 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이며, 부적법한 이의제기를 통보받은 법원은 이의제기의 부적법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¹⁾
- 한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행정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취소 가능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4669 판결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 (후략) ...

- 따라서 부적합한 이의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과태료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행정청은 스스로 과태료 부과처분 및 체납처분을 취소할 수 있을 것임
- 단, 이는 부적합한 이의제기에 의한 취소가 아닌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취소로서 과태료 처분을 취소할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이라 할 것임 ▣

1)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018, 457면.